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도 배경

■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강화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기업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인식 및 안전보건정책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 시설, 인원 등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정법 제14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

해외 사례

(미국) 안전경영시스템(Process Safety Management)을 도입·운영한 화학업체에서 5년 후 사망자 132명, 부상자 767명 재해감소(42%) 효과 및 경제적으로는 시행 5년간 7.2억달러, 시행 6~10년은 연간 14.4억달러 비용 절감

(듀폰사)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한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터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듀폰은 안전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안전경영을 상품화하여 세계기업에게 안전보건경영체제를 제공하여 회사 부가가치 창조

(Goodyear사) BAPP(Behavior Accident Prevention Process)라는 안전보건경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00만건의 위험한 행동과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을 제거·개선하여 도입 3년 만에 재해율 38% → 1.3%로 감소

국내 사례

(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도입하여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사업장(791개소)에서 3년 이후 사망만인율 평균 67%p 감소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도입한 건설회사(22개소)에서 사고사망자('09년 : 84명 → '19년 : 33명) 51명(60.7%) 감소

II

제도 개요

법령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 · 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 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3. 안전 ·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 의무대상

-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②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 대표이사 의무내용

-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 ※ 안전보건계획이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함
 - ※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
-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75조제4항제2호)
- 또한, 대표이사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이행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장별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①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 ④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 절차



○ 안전보건계획은 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및 개선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매년 기업의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전년도 안전보건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내용·빈도,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평가와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보건계획 5요소(SMART)

○ 안전보건계획은 회사의 사고나 재해를 막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으로, SMART기법을 활용하여 회사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구체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Specified)
- ②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Measurable)
- ③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Attainable)
- ④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Realistic)
- ⑤ 시기 적절한 실행계획일 것(Timely)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 및 유의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대표이사)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 안전보건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회사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세부전략으로 고려할 사항

- ① 회사 안전보건 위험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③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④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⑤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⑥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등) 안전보건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체계적인 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대표이사)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검토, 기획이나 그 실행을 분담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조직구성)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①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②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합니다.
- ③ 생산라인과 직결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 ④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에서 통상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상급자는 차 하급자에게 자신의 직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조직인원) 안전·보건관리조직 인원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①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능력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전보건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④ 안전보건상의 책임(공동장비, 작업장소 및 인원관리)지정과 업무분장을 해야 합니다.
- ⑤ 문제점을 지적·보완할 수 있는 관리자를 조직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조직역할) 안전·보건방침 및 효율적 안전·보건관리 역할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① 안전보건조직에서 수행하는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협력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②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적절한 관리통제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③ 안전보건조직은 다른 부서 및 현장 생산조직과 기능·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현장근로자의 고충사항·개선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④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⑤ 조직 내의 위험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⑥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⑦ 관리감독자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찾아 사고 발생 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

(안전보건예산 반영) 회사의 아무리 훌륭한 안전보건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움

- (대표이사) 안전보건 투자는 단기간 회계적 이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투자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생산과 사회의 신뢰를 얻어 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예산)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반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필요한 비용 등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평가 필요

- ①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 ③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 ④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⑤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 ⑥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 ⑦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 ⑧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 ⑨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안전보건 시설) 회사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① 안전보건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시설 및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③ 유해화학물질취급의 안전시설은 화학물질의 유출·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④ 추락방지시설,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시설, 가스검지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⑤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활동의 수립)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보고서를 받아 그 성적을 평가하고 안전보건활동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개선하여 다음 연도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대표이사)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보건 목표는 본사 조직별, 현장별 목표와 전체 목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개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활동실적)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목표 등 이행실적 및 달성정도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①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보건교육 실적
 - ②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감소 실적
 - ③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내용
 - ④ 근로자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사항
 - ⑤ 협력업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⑥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및 미흡한 점
 - ⑦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개선 활동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목표 달성하기 위한 본사 및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활동 추진계획 수립 시 전년도 활동실적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① 목표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과 연계성
- ② 추진계획이 구체적일 것(방법, 일정, 소요자원 등)
- ③ 추진내용을 측정할 지표를 포함
- ④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책임자를 지정
- ⑤ 충분한 재정 및 기타 자원을 지원
- ⑥ 유해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위험성평가)를 결정
- ⑦ 발생한 산업재해와 유사한 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주요 Q&A

Q1 법 제14조의 시행일은 '21. 1. 1부터인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21. 1. 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A 법 제14조의 시행일인 '21.1.1 이후 해당 연도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으면 되고, 반드시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이사회 보고 및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개정법의 시행일이 '20. 1. 16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부담자인 대표이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시행일을 '21. 1. 1로 유예한 것임)

Q2 법 제14조 내용중 “매년”은 매 회계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승인일 기준 1년 이내를 의미하는지?

A 법 제14조에서의 “매년”은 당해 연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회계연도가 이와 동일 하다면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대표이사는 당해 연도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연초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Q3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인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기준 연도는?

A 제조업 등은 당해 연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와 건설업은 전년도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인 경우,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임

Q4 공장 또는 건설현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는 서울 등에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정기감독 등을 실시할 때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A 법 제14조의 목적은 기업경영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역시 매우 중요한 경영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회사의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여 산재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임

Q5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의미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동조 동항 각 호의 내용이 정관에 정하여져야 한다는 것인지?

A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의미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경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동조 동항 각호의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Q6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에도 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A 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은 상법 제17조에 따른 주식회사이므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 등 공기업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본부	산업안전과	세종 한누리대로 422	30117	044)202-71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04541	02-2250-5772
서울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06278	02)584-0009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05717	02)2142-8872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04157	02)2077-6171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7262	02)2639-2100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01137	02)950-9831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	08390	02)3281-00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22101	032)460-4419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21068	032)540-7910
부천시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 부천시 석천로 207	14537	032)714-8700
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11787	031)850-7641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10497	031)931-2800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16324	031)259-0265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3627	031)788-1505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14087	031)463-7300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15358	031)412-1992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17739	031)646-1114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24233	033)269-3551
강릉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	25535	033)650-2500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	26387	033)769-0800
태백지청	근로개선지원팀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26015	033)552-8603
영월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232	033)374-000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47065	051)850-6480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46332	051)559-6670

기관명	부서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부산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	46938	051)309-1556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양대로 249번길 4	51430	055)239-6580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	44664	052)228-1889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50635	055)387-0009
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 43	52629	055)752-1752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3016	055)650-194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42140	053)667-6200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42768	053)605-9000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2번길 8	37761	054)271-6700
구미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39390	054)450-3500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6088	054)639-1111
안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6643	054)851-80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61011	062)975-6200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산재예방지도팀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63219	064)728-6100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55014	063)240-3399
익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54552	063)839-0008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	54076	063)450-0530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58691	061)280-0100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59691	061)650-010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35238	042)480-6290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28798	043)299-1114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31107	041)560-2800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3-3	27428	043)840-4000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충남 보령시 옥마로 42	33482	041)931-6640
서산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충남 서산시 쌍연남1로 37	31979	041)661-5694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대표번호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남구·서초구·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02-6711-2800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0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중랑구 및 노원구	02-3783-8300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033-820-2580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051-520-0510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52-226-0510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10
경남동부지사	양산시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5-371-7500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062-949-8700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00
전남지역본부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061-288-8700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0
전북서부지사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00
전남동부지사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00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053-609-0500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054-478-8000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053-650-6810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17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032-510-0500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259-7149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41-4900
경기중부지사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00
경기서부지사	안산시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99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00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042-620-5600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충청북도	043-230-7111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	041-570-3400